

의안번호	2200480
의 퇴 인	박주민 의원
회 답 일	2024. 7. 11.
추 계 번호	24A0932
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기요금 감면에 대해 비용을 보전할 경우(지원율 50% 가정)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에 3,546억원, 2029년에 3,816억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총 1조 8,441억원(연평균 3,688억원)으로 추계됨
- 본 추계 결과는 전기판매사업자의 전기요금 감면에 대한 국가의 지원율을 50%로 가정하고, 재량지출성 재정수반요인과 관련하여 추가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한 결과로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이와 다를 수 있음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평균
전기요금의 감면 (안 제17조의3)	3,546	3,631	3,693	3,756	3,816	18,441	3,688

주: 본 추계 결과는 전기판매사업자의 전기요금 감면에 대한 국가의 지원율을 50%로 가정하고, 재량지출성 재정수반요인과 관련하여 추가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한 결과로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이와 다를 수 있음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7조의3 (전기요금의 감면)	전기판매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경우 국가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감면된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(제3항)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17조의3 (전기요금의 감면)	○	한국전력공사의 현행 전기요금 감면 수준에 근거하여 추계함(개정안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추가로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경우는 미포함)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□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한국전력공사의 현행 전기요금 감면 수준에 근거하여 추계함

- 개정안은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「장애인복지법」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등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데, 현행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감면 제도와 비교할 때 “혹한기 또는 혹서기 등 전기요금의 감면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는 감면의 폭을 확대할 수 있”으므로(안 제17조의3제2항) 감면 정도가 현행보다 확대될 수 있음
- 이러한 추가 감면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그 규모 등을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한국전력공사의 현행 전기요금 감면 수준에 근거하여 추계함
- 한편 향후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감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나, 이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가정을 하기 어려우므로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감면 금액 변동은 고려하지 않음

□ 개정안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기요금 감면에 대해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(안 제17조의3제3항), 지원율은 50%로 가정함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실제 지원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□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

2025년부터 2029년까지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비용추계 대상은 “전기판매사업자의 전기요금 감면에 대한 보전금액”으로 하며,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감면 금액을 추정한 후 국가가 해당 금액의 50%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함
 -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에 따르면, 한국전력공사의 2023년 전기요금 감면 규모는 6,770억원 수준임
 - 전기요금 감면 대상자별(안 제17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10호)로 향후 전력소비량을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의 「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(2022~2036)」(2023.1.13.)의 2025~2029년 전력소비량 증가율(기준수요)을 원용함

[표 2]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감면 규모 추정: 2025~2029년

	2025	2026	2027	2028	2029
감면 규모(억원)	7,092	7,262	7,386	7,511	7,631
전력소비량 증가율(%)	2.2	2.4	1.7	1.7	1.6

주: 전력소비량 증가율(%)은 산업통상자원부의 「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(2022~2036)」(2023.1.13.)의 기준수요(전국, 전력계통) 기준임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기요금 감면에 대해 일부(50%) 보전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에 3,546억원, 2029년에 3,816억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총 1조 8,441억원으로 추계됨
 - 본 추계 결과는 전기판매사업자의 전기요금 감면에 대한 국가의 지원율을 50%로 가정하고, 재량지출성 재정수반요인과 관련하여 추가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한 결과로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이와 다를 수 있음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
전기요금의 감면 (안 제17조의3)	3,546	3,631	3,693	3,756	3,816	18,441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 결과는 전기판매사업자의 전기요금 감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50%로 가정하고, 재량지출성 재정수반요인과 관련하여 추가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한 결과로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이와 다를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권아영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nabo.go.kr